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0051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354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00513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변론 종결2018. 5. 24.

판결 선고2018. 6. 21.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8. 11. 28. C이 소외 주식회사 D(정발산지점, 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199,750,000원(이후 16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11. 27.(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2013. 3. 14. C이 D(일산장항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450,000,000원(이후 427,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3. 13.(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로서 공동피고였던 B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C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427,5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B은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 2016. 8. 2.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여(최종이자수입일은 2016. 6. 30.)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5. D에게 합계 599,130,92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은

1,081,504원이고, 위약금은 164,170원이다. 그 결과 C 및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600,376,599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599,130,9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25.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¹⁾).

나. 피고와 B 사이의 거래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와 배우자인 E은 공동으로 1982년부터 F시장 및 G시장 내에서 'H'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3년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707,611,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B으로부터 2016년 여름 선글라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6. 4. 1.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3) 피고는 B에게 물품대금과 별도로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B은 2016. 4. 21.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화성시 I 답 1491.6m², J 답 2140.7m²(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686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다. 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당초 2013. 11. 7.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2016. 9. 2.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가, 같은 달 13. 채권자 D, 청구금액 402,972,016원으로 하는 가압류가 각 등기되었다. 한편 2016.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268,790,200원이다.

(2)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화성시 K 대 93m² 및 L 대 208m² 중 각 2/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M의 신청(청구금액 25,492,287원)으로 2016. 2. 29. 수원지방법원 N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9. 29.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지분의 감정가액은 47,827,820원으로 산정되었다.

(3) B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587,500,000원(= 160,000,000원 + 427,500,000원) 이외에 2016. 8. 기준으로 D에 대하여 2014. 11. 3.자 6,000만 원, 2011. 1. 10.자 3,500만 원의 신용대출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2013. 11. 7.자 1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채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2013. 11. 8.자 191,153,000원의 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1) 한편 D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O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5. 17. 매각되었다.

(2) 위 집행법원은 2017. 7. 21. 실제 배당할 금액 201,756,210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D에게 164,276,211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600만 원을 각 배당한 다음, 3순위로 동작세무서에 921,600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 D, D, 주식회사 P,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각 119,300원, 240,372원, 58,097원, 19,316원, 121,2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673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 발생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선의라고 다룬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과 2013년 B의 연대보증하에 C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속 보증기한을 갱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각 신용보증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개월 후인 2016. 6. 30. 원고로부터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D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최종납부한 이래 8. 2.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불과 4개월 만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것이며, 이후 원고가 2016. 11. 25.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에게 합계 599,130,925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의 무자력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316,618,02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68,790,200원 + Q리 부동산 47,827,82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가압류집행이 된 채무를 제외하고서라도 1,057,929,211원(= D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합계 587,500,000원²) + 신용대출채무 35,000,000원 + 60,000,000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91,153,000원 + D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64,276,211원 +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0,000,000원)에 이르므로, B은 채무초과상태임이 분명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그 처분행위가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2)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 C은 피고 남편인 E의 계좌로 거래상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1.에 400만 원, 같은 달 2.에 200만 원, 같은 달 3.에 400만 원, 2016. 4.에 800만 원, 같은 해 5.에 672만 원, 같은 해 6.에 400만 원, 같은 해 7. 3,400만 원을 각 입금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전후로 피고에게 꾸준히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8,790,200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던 점, ㉢ 피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1억 원 정도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 500만 원(선글라스 5,000개를 기준으로 1개당 1,000원씩 판매시에 지급) 합계 2,500만 원에 합당한 3,600만 원으로 정한 점, ㉣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4개월이 지난 2016. 8.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6. 9.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로된 점, ㉤ 피고 또는 E이 B의 재산 또는 채무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선희

판사정금영

판사임미경

별지

1) 원고는 당초 C 및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C 및 B은 2017. 6. 22. 원고 청구를 인낙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는 위 D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므로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